이 보도자료는 2020. 6. 8.(월)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영림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 2020. 6. 8.(월)

제 목

코스닥 상장사 신라젠㈜ 경영진등 비리 중간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 죄명, 공소시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시경위, 수시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(부장검사 서정식)는 <u>코스닥 상장기업인</u>
 신라젠㈜의 불공정거래 시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
 現 대표이사 AOO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
 - <u>대표이사 AOO 등</u>은 '14. 3.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'<u>자금돌리기</u> 방식'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를 인수하여 1,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㈜에 손해를 가함
 - <u>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</u>한 L社㈜ 임원진의 책임을 물어 L社㈜도 **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**하여 기소함
 - <u>전략기획센터장 전무 DOO</u>은 '19. 6. 27.~7. 3. 항암치료제 <u>펙사벡의</u> <u>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</u>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**64**억 원의 손실을 회피함
 - 또한, 대표이사 AOO 등은 '13. 7.경 ㈜□社에 특허대금을 부풀려 지급(7,000만 원→30억 원)하는 방법으로 신라젠㈜에 29억 3,000만 원의 손해를 가함
 - 그밖에, <u>대표이사 AOO</u>은, ① '15. 3.~'16. 3. 지인들에게 <u>부풀린</u> 수량의 스톡옵션(46만 주)을 부여한 후 <u>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</u>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,

- ② '19. 6. 17. 채권회수 조치 없이 <u>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</u>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 <u>전액 손상처리</u>하여 <u>신라젠㈜에 손해</u>를 가함
- 검찰은 <u>추징보전 조치</u>를 통해 <u>AOO 등의 고가주택, 주식 등 1,354억 원</u> <u>상당의 재산을 확보</u>하였고, 향후 <u>추가 추징보전 조치</u>를 통해 <u>범죄로</u> 얻은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임
- 한편, AOO 등 신라젠㈜ 전·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의혹은 주식매각시기,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추어 혐의 인정하기 어렵고, 그밖에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㈜과 관련된 정·관계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함
- <u>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였고, 투기자본감시</u> 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 진행 예정임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**AOO** [54세, 구속, 신라젠㈜ 대표]
- BOO [55세, 구속, 신라젠㈜ 前 대표('08. 4.~'14. 2.)]
- COO [55세, <u>구속</u>, 신라젠㈜ 前 감사(12. 3.~14. 2.), 前 이사(14. 2.~16. 9.)]
- **DOO** [48세, <u>구속</u>, 신라젠㈜ 전략기획센터장(전무)]
- **EOO** [65세, 불구속, ㈜ 기社 대표]
- FOO [57세, 불구속, 신라젠㈜ 창립자, 신라젠㈜ 前 대표]
- GOO [55세, 불구속, ㄴ社㈜ 부사장(前 기업금융사업부 부서장)]
- HOO [47세, 불구속, ㄴ社㈜ 상무보(前 기업금융사업부 재무자문서비스 본부장)]
- □ ㄴ社㈜ ['82. 1. 1. 금융투자업 목적으로 설립]
 - ※ 신라젠㈜: '16. 12. 코스닥 상장,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

② 공소사실 요지

가. AOO, BOO, COO, EOO, GOO, HOO, 니社㈜

 ○ '14. 3. 4.경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1천만 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함으로써, 금융투자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와 관련 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1,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,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함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(사기적 부정거래)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

나. DOO

●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('19. 8. 2. 공개)를 지득한 후, '19. 6. 27.~7. 3. 보유 주식 전량인 167,777주를 합계 88억 원 상당에 매도함 으로써 64억 원 상당의 손실회피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(미공개중요정보이용)]

다. AOO, BOO, COO, FOO

13. 7.경 신라젠이 ㄹ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㈜□社를 끼워넣고 매수대금을 부풀려(7,000만 원→30억 원)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라젠에 29억 3,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

라. AOO

 ○ '15. 3.~'16. 3. 지인 5인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(46만 주)을 부여한 후,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하고, 그 중 일부(11만 주)는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침 [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] ● '19. 6. 17.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, '19. 8. 2. 전액 손상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

2 수사경과

- '19. 8. 13. 금융위원회 긴급조치(FAST TRACK) 요청 접수
- □ '19. 8.~'20. 3. 신라젠㈜, ㄴ社㈜ 등 압수수색, 계좌추적
- '20. 4. 17. BOO, COO 구속
- '20. 4. 21. AOO 주거지 압수수색
- '20. 5. 4. BOO, COO 구속기소
- '20. 5. 11. AOO 구속
- '20. 5. 20. DOO 구속
- '20. 5. 29. AOO 구속기소, EOO, FOO 불구속기소
- '20. 6. 8. DOO 구속기소, AOO 추가기소

GOO, HOO, 니社㈜ 불구속기소 <u></u>

[별첨]

피고인별 처분내용

| 순번 | 피고인 (나이) | 신분 | 주요 공소사실 요지[죄명] | 처분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1 | AOO (54세) | 신라젠㈜ 대표이사 | · BOO, COO, EOO, GOO, HOO과 공모하여, '14. 3. 4.경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 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1천만 주 상당의 신주인수 권을 교부받아 행사함으로써, 금융투자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1,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,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함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| |
| | | | · BOO, COO, FOO와 공모하여, '13. 7.경 신라젠이 ㄹ대학교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㈜□社를 끼워넣고 매수대금을 부풀려(7,000만 원→30억 원)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라젠에 29억 3,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| 5. 29. 구속 기소 |
| | | | · '15. 3.~'16. 3. 지인 5인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(46만 주)을 부여한 후,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하고, 그 중 일부(11만 주)는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침 [업무상 배임, 업무상배임미수] | |
| | | | · '19. 6. 17.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, '19. 8. 2. 전액 손상처리함으로써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함 [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| 6. 8. 추가 기소 |
| 2 | BOO (55세) | 신라젠㈜ 前 대표이사 | · AOO, EOO, GOO, HOO과 공모하여, '14. 3. 4.경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1천만 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함으로써, 금융투자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1,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,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함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| 5. 4. 구속 기소 |
| 3 | COO (55세) | 신라젠㈜ 前 감사 | · AOO, FOO와 공모하여, '13. 7.경 신라젠이 ㄹ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㈜□社를 끼워넣고 매수대금을 부풀려(7,000만 원→30억 원)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신라젠에 29억 3,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| 5. 4. 구속 기소 |
| 4 | DOO (48세) | 신라젠㈜ 전략기획센터장(전무) | ·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('19. 8. 2. 공개)를 지득한 후, '19. 6. 27.~7. 3. 보유 주식 전량인 167,777주를 합계 88억 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64억 원 상당의 손실회피 [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 | 6. 8. 구속 기소 |

| 5 | EOO (65세) | ㈜ [¬] 社 대표 | · AOO, BOO, COO, GOO, HOO과 공모하여, '14. 3. 4.경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1천만 주 상당의 신주 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함으로써, 금융투자상품인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1,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,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함 [자본시장과금 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배임)] | 5. 29. 불구속 기소 |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6 | FOO (56세) | 신라젠㈜ 前 대표이사 | · AOO, BOO, COO과 공모하여, '13. 7.경 신라젠이 ㄹ대학교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㈜⊏社를 끼워넣고 매수대금을 부풀려(7,000만 원→30억 원)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라젠에 29억 3,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[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| 5. 29. 불구속 기소 | |
| 7 | GOO (55세) | ㄴ社㈜ 부사장 | · AOO, BOO, COO, EOO와 공모하여, '14. 3. 4.경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1천만 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함으로써, 금융투자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와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1,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, 피해자 신라젠에 손해를 가함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| 6. 8. 불구속 기소 | |
| 8 | HOO (47세) | ㄴ社㈜ 상무보 | | 6. 8. 불구속 기소 | |
| 9 | ∟社㈜ | - | · 피고인의 직원 GOO, HOO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7, 8번과 같이 위반행위를 함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 | 6. 8. 불구속 기소 | |